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6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의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0410 계금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5. 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경 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50개월간 납입하여 5,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의 5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계의 4번째 구좌의 계금 5,000만 원을 탈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계금 지급 채무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정산된 것처럼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계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 내지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채무 부담 여부 또는 계금의 정산 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